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6. 10(월) 10:00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3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5. 28.
- 라. 회부일자 : 2024. 5. 28.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하였음.

3. 검토내용

가. 금천구 결산 총괄

1) 2023회계연도 결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C=A-B)
합 계	907,504,542,186	939,282,403,857	719,070,318,639	220,212,085,218
일반회계	871,278,405,646	902,765,906,394	706,977,285,639	195,788,620,755
특별회계	36,226,136,540	36,516,497,463	12,093,033,000	24,423,464,463

회 계 별	이월액(D)			보조금실제반납금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반납금	교부차액		
합 계	40,295,193,340	41,493,613,360	28억	8,254,748,246	△854,022,640	0	128,222,552,912
일반회계	40,295,193,340	38,049,025,250	28억	8,224,906,056	△851,142,640	0	107,270,638,749
특별회계	0	3,444,588,110	0	29,842,190	△2,880,000	0	20,951,914,163

-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39,282,403,857원으로 예산현액 907,504,542,186원보다 31,777,861,671원이 더 수납되었음.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6.5%인 719,070,318,639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212,085,218원임.
- 이 중 명시이월비 40,295,193,340원, 사고이월비 41,493,613,360원, 계속비이월 2,800,000,000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7,400,725,606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 0원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28,222,552,912원임.

2)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원)

회 계 별	계	기편성예산	추경재원조정액	비 고
합 계	128,222,552,912	97,666,681,000	30,555,871,912	
일반회계	107,270,638,749	78,215,001,000	29,055,637,749	
특별회계	20,951,914,163	19,451,680,000	1,500,234,163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128,222,552,912원으로서 2024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78,215,001,000원과 특별회계 19,451,680,000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29,055,637,749원과 특별회계 1,500,234,163원을 합한 30,555,871,912원이 2024년도 추경재원으로 편성 가능한 금액임.

3)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별	예산액	지출결정액(A)	지출액(B)	이월액(C)	지출잔액(D=A-B-C)
합 계	48,4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일반회계	48,331,748,000	130,000,000	119,500,000	0	10,500,000
특별회계	100,000,000	0	0	0	0

○ 202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8,331,748,000원으로서 전년도 32,473,993,000원보다 15,857,755,000원 증가하였으며,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으로 130,00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19,500,000원을 지출하고 0원을 이월하였으며, 10,500,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함.

4)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계	39,960,529,938	1,546,401,681	11,109,730,656	9,563,328,975	41,506,931,619
남북교류협력기금	153,217,990	52,668,650	53,718,650	1,050,000	205,886,640
재 난 관 리 기 금	6,813,509,572	△984,011,930	1,153,263,550	2,137,275,480	5,829,497,64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799,987,774	2,742,978,352	2,742,978,352	0	20,542,966,126
청 년 미 래 기 금	2,060,176,208	63,412,830	113,589,470	50,176,640	2,123,589,038
중소기업육성기금	5,911,786,069	△853,277,453	4,065,877,130	4,919,154,583	5,058,508,616
자 활 기 금	916,250,274	184,245,242	233,494,242	49,249,000	1,100,495,516
노 인 복 지 기 금	351,435,402	506,658	7,884,158	7,377,500	351,942,060
양 성 평 등 기 금	461,077,480	△31,349,887	9,123,763	40,473,650	429,727,593
환경공무원자녀학자금 대 여 기 금	476,551,225	△5,116,550	23,082,650	28,199,200	471,434,675
재활용품판매대금 관 리 기 금	308,953,648	38,753,425	41,079,907	2,326,482	347,707,073
옥외광고발전기금	1,133,678,660	△132,942,540	148,246,630	281,189,170	1,000,736,120
도로굴착복구기금	2,690,685,059	486,381,671	2,417,872,541	1,931,490,870	3,177,066,730
식 품 진 흥 기 금	883,220,577	△15,846,787	99,519,613	115,366,400	867,373,790

○ 본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 전년도말 39,960,529,938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1,109,730,65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563,328,975원이고 차인잔액은 1,546,401,681원임.

나. 의회사무국 결산(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계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 잔액	
의회 사무국	4,047,574	3,630,541	417,033	0	363,706	53,327	

○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현액은 40억 4,757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7%인 36억 3,054만 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억 1,703만 3천원(10.3%)임.

1)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금액	집행률	금액	불용율	
계	4,047,574	3,630,541	89.7	417,033	10.3	
선진의회상정립	1,235,122	1,160,199	93.9	74,923	6.1	
의정 활동 지원	88,360	81,322	92.0	7,038	8.0	
열린 의회 운영	79,156	67,796	85.6	11,360	14.4	
의정 홍보 활동 전개	85,073	84,982	99.9	91	0.1	
구의회청사관리	123,578	122,956	99.5	622	0.5	
의 회 비 지 원	802,297	755,611	94.2	46,686	5.8	
의회 장비 보강	24,400	23,780	97.5	620	2.5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	7,590	5,089	67.0	2,501	33.0	
인력 및 조직운영	24,668	18,663	75.7	6,005	24.3	
행정운영경비	2,812,452	2,470,342	87.8	342,110	12.2	
인 력 운 영 비	2,708,339	2,373,232	87.6	335,107	12.4	
기 본 경 비	104,113	97,110	93.3	7,003	6.7	

○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4억 1,703만 3천 원(불용율 10.3%)을 정책(부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 선진의회상 정립 부문 집행잔액은 7,492만 3천 원(불용율 6.1%)이고,
- 행정운영경비 부문 집행잔액은 3억 4,211만원(불용율 12.2%)임.

가)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계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비 고
계	417,033	0	363,706	53,327	
의정 활동 지원	7,038	0	6,600	438	
열린 의회 운영	11,360	0	10,000	1,360	
의정 홍보 활동 전개	91	0	0	91	
구의회청사관리	622	0	0	622	
의회비지원	46,686	0	12,000	34,686	
의회장비보강	620	0	0	620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	2,501	0	0	2,501	
인력 및 조직운영	6,005	0	0	6,005	
인력 운영비	335,107	0	335,106	1	
기본경비	7,003	0	0	7,003	

○ 의회사무국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4억 1,703만 3천 원(불용율 10.3%)을 발생 원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3억 6,370만 6천 원으로 87.2%임.
- 지출잔액은 5,332만 7천 원으로 12.8%임.

○ 집행잔액 총액에서 87.2%를 차지하고 있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공무원 교육 여비 : 6,600천원

→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자치구 분담금 없이 개최하고, 의장단 해외연수 수행 직원이 없었으며, 공무원 위탁교육 수요 미발생

- ‘열린의회운영’ 사업 중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 : 10,000천원

→ 의정모니터 미운영

- ‘의회비지원’ 사업 중 의원국외여비 : 12,000천원

→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자매결연 미발생

- ‘인력운영비’ 사업 중 보수, 기타직보수,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금 : 335,106천원

→ 2023년 신규직원 3명 임용포기 및 정책지원관 3명 하반기 채용

○ 집행잔액 총액의 12.8%를 차지하고 있는 지출잔액의 세부내역은,

- ‘의정활동지원’ 사업 중 행사운영비 등 : 438천원

- ‘열린의회운영’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 1,360천원

- ‘의정홍보활동전개’ 사업 중 공공운영비 등 : 91천원

- ‘구의회 청사관리’ 사업 중 공공운영비 등 : 622천원

- ‘의회비지원’ 사업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 34,686천원

- ‘의회장비보강’ 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 620천원

-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 사업 중 포상금 등 : 2,501천원

- ‘인력 및 조직운영’ 사업 중 특정업무경비 등 : 6,005천원

-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사업 중 국내여비 등 : 7,004천원

※ 결산서 487p, 심사보조자료 5~9p 참고

다. 검토의견

1) 연도별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 고
			금 액	비율(%)	
2023	4,047,574	3,630,541	417,033	10.3	
2022	3,557,487	2,819,116	738,371	20.8	
2021	3,349,884	2,993,932	355,952	10.6	
2020	3,138,218	2,929,747	208,470	6.6	
2019	3,175,181	2,962,573	212,608	6.7	

2) 의회사무국 집행잔액(불용율 30%이상)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의정활동지원	공무원 교육여비	600	0	600	100
열린의회운영	사무관리비	2,000	0	2,000	100
	행사실비지원금	3,000	0	3,000	100
의회비지원	의원국내여비	16,100	10,468	5,632	35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4,000	2,476	1,524	38
직원복무 및 상훈관리	포상금	5,900	3,400	2,500	42
인력 및 조직운영	행사운영비	2,000	999	1,001	50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255	83	172	67
	국내여비	15,624	10,547	5,077	32

○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4억 1,703만 3천 원으로 2022회계연도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10.5% 감소하였으며,

- 이는 의정활동지원 및 구의회 청사관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의 세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소속직원의 결원이 충원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감소하였음.

- 다만, 일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심도있는 심사와 정확한 계상을 통한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향후 사업별 목적과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2023. 8. 16., 타법개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